송도 더샵 그린워크III (D17-1) 외국인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사항
■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화 상담 운영 - 송도 더샵 그린워크III(D17-1BL) 분양전환아파트는 '보여주는 집'을 대신하여 사이버 견본주택(www.더샵그린워크분양전환.com)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1811-9920)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시, 홍보관 방문 가능 날짜, 시간,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일정 외에는 홍보관 방문이 불가합니다.) - 홍보관 방문 및 각 세대 방문은 당첨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1인만 가능하며 위임장 필요, 특히,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등의 방문은 제한될 수 있음.) ■ 당첨자의 홍보관 방문 및 당첨 세대 방문 시, 준수 사항 (당첨자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세대 방문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방문 및 당첨 세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37.2도가 넘을 경우 입장 제한) - 손 소독제 사용, 체온 측정 등 감염 예방 수칙 적극 협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세대 개방 및 서류 접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모집안내]

■ 이 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송도 더샵 그린워크III 아파트이며, 2015년 10월 준공 이후 공실이었던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에서의 분양이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신탁㈜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준공 후 임대 이력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유하였습니다.
- 잔금 납부 후 2020.8.10 부터 입주가 가능한 분양전환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신탁부동산을 위탁해 진행하는 부동산담보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이고, 아시아신탁㈜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는 세대 개방일에 현장에 방문하여 단지 여건, 세대 내·외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 기간 내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외국인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마루,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기타마감재 등]의 노후화 및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작동불량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202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이 공고문과 관계법령이 상이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7.1.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지역(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조건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자는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가능일 부터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2020.6.19.이후)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경우 그 기간이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5년으로 함)까지 전매가 금지되며(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됨.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0.7.1.)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 접수 결과 미달 세대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 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 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8천만원(수도권은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1년 이상 가입자→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일반공급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1인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당첨자발표일이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청약신청금 납부'에서'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더샵그린워크분양전환.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본 아파트가 속한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으로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11일이 경과한 후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외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인천광역시2년 이상 거주자는1순위 당해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며,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으로 접수해야 함
(타지역 청약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구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대상 세대 개방	계약체결
일정	7.14(화)	7.15(수)	7.22(수)	7.23(목)~7.26(일)	8.3(월)~8.5(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별도 통보	홍보관 방문 (10:00 ~ 16:00)
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각 당첨 세대	홍보관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13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 ~ 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9267호(2020.06.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20 (송도동18-5번지), 송도 더샵 그린워크III 17-1BL
■ 공급규모: 아파트 3개동(1701~1703동) 지하 2층~지상 29층, 일반공급 40세대
■ 입주시기: 잔금완납 시2020.8.10.부터입주 가능(잔금납부기한은2020.11.10.까지임)
■ 공급면적

주택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전체 세대수	외국인 임대분 분양전환 세대수	저층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2020-000821	01	84.7200	84B	84.7200	28.3100	113.0300	66.5300	179.5600	45.3100	48	9	2
		02	84.7300	84C	84.7300	29.3800	114.1100	66.5500	180.6600	45.3100	98	8	4
		03	104.8500	104	104.8500	34.6600	139.5100	82.3600	221.8700	56.0700	100	23	4
	합계										246	40	10

※ 면적 환산방법(공급면적→평) : 공급면적(㎡)X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카다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용 현관, 벽체공유면적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세대별 세부면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단위 : 원)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공급 세대수	동	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체결일]	잔금(90%) [2020.11.10. 까지]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84.7200B	9	1701동	1호	2층	1	308,301,000	273,399,000		581,700,000	58,170,000	523,530,000
				3층	1	311,428,000	276,172,000		587,600,000	58,760,000	528,840,000
				4층	1	314,608,000	278,992,000		593,600,000	59,360,000	534,240,000
				5층	1	317,841,000	281,859,000		599,700,000	59,970,000	539,730,000
				6층	1	317,841,000	281,859,000		599,700,000	59,970,000	539,730,000
		1703동	1호	2층	1	308,301,000	273,399,000		581,700,000	58,170,000	523,530,000
				3층	1	311,428,000	276,172,000		587,600,000	58,760,000	528,840,000
				4층	1	314,608,000	278,992,000		593,600,000	59,360,000	534,240,000
				5층	1	317,841,000	281,859,000		599,700,000	59,970,000	539,730,000
84.7300C	8	1702동	1,2,3,4호	2층	4	308,301,000	273,399,000		581,700,000	58,170,000	523,530,000
				3층	4	311,428,000	276,172,000		587,600,000	58,760,000	528,840,000
104.8500	23	1701동	4,5호	2층	2	361,248,000	291,229,091	29,122,909	681,600,000	68,160,000	613,440,000
				3층	2	368,827,000	297,339,091	29,733,909	695,900,000	69,590,000	626,310,000
				4층	2	372,643,000	300,415,455	30,041,545	703,100,000	70,310,000	632,790,000
				5층	2	376,459,000	303,491,818	30,349,182	710,300,000	71,030,000	639,270,000
				6층	2	376,459,000	303,491,818	30,349,182	710,300,000	71,030,000	639,270,000
		1703동	4,5호	2층	2	361,248,000	291,229,091	29,122,909	681,600,000	68,160,000	613,440,000
				3층	2	368,827,000	297,339,091	29,733,909	695,900,000	69,590,000	626,310,000
				4층	2	372,643,000	300,415,455	30,041,545	703,100,000	70,310,000	632,790,000
				5층	2	376,459,000	303,491,818	30,349,182	710,300,000	71,030,000	639,270,000
				6층	2	376,459,000	303,491,818	30,349,182	710,300,000	71,030,000	639,270,000
				7층	2	376,459,000	303,491,818	30,349,182	710,300,000	71,030,000	639,270,000
				8층	1	376,459,000	303,491,818	30,349,182	710,300,000	71,030,000	639,270,000

※ 공급금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감정평가 금액은 2015년 10월 준공후 공실로 유지된 주택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세대별 향, 층, 시설물의 노후화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책정되었음.

※ 주택공급 신청 시[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거전용면적인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공급면적(㎡) 또는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이 주택의 홍보관(1811-9920)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경기 지역에거주하여도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1년, 수도권외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인천광역시 / 수도권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공급신청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100%가점제) ①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②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공급신청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50%, 추첨제50%) ①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②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 선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85㎡ 초과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가능)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제한 대상	③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 제한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2순위 청약불가

3. 청약 신청방법

■ 신청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0.7.14.(화) 08:00~17:30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0.7.15.(수) 08:00~17:30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2.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익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은행창구 방문접수 시(창구 접수시간: 09:00～16:00), 반드시 해당 지점의 영업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본인확인증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표등본1통, 분리세대 구성 시: 가족관계증명서1통)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9월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2007년9월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2007년9월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계속하여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9">①
무주택 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9년 미만</td><td>18</td><td rowspan="9">•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
부양
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d rowspan="4">•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만30세 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9년 미만</td><td>10</td><td rowspan="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td></tr>
<tr><td>6개월 이상~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10년 미만</td><td>11</td><td></td><td></td></tr>
<tr><td>1년 이상~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11년 미만</td><td>12</td><td></td><td></td></tr>
<tr><td>2년 이상~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12년 미만</td><td>13</td><td></td><td></td></tr>
<tr><td>3년 이상~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13년 미만</td><td>14</td><td></td><td></td></tr>
<tr><td>4년 이상~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14년 미만</td><td>15</td><td></td><td></td></tr>
<tr><td>5년 이상~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15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6년 이상~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d></td><td></td></tr>
<tr><td></td><td></td><td>7년 이상~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able>

4.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방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85㎡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85㎡ 초과: 일반공급 세대수의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나머지50%는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본주택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해당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2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50% 선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감정원'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예비입주자 지위가 인정됨. (※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예비입주자 지위기간 동안 당사 분양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외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당첨자 발표

■ 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대상 세대 개방	당첨자 서류제출(자격 검증) 기간	계약체결
일반공급 (1, 2순위)	• 일시: 2020.7.22(수) • 확인방법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2020.7.23.(목)~2020.7.26.(일) -10:00 ~ 16:00 • 방법 등은 당첨자발표 이후, 별도 안내	• 일시 - 2020.7.27.(월) ~ 2020.7.31.(금)(10:00~16:00) • 대상: 당첨자 (예비당첨자 제외) • 장소: 홍보관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로131)	• 일시 - 2020.8.3.(월)~2020.8.5.(수)(10:00~16:00) • 장소: 홍보관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로131)

※ 당첨자 명단은'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예비입주자 지위기간 동안 당사 분양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이용기간	2020.7.22.(수) ~ 2020.7.26.(일) (5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청약조회→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당첨조회→ 당첨조회(10일간)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7.22.(수)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확인방 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 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 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 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1호 또는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8천만원(수도권은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시에만 인정됨. 특별공급 청약 신청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9월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2007년9월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2007년9월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 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함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수도권: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1년으로 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6. 당첨자 제출 서류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일반공급) 및 예비당첨자는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추후 지정하는 장소로 제출해야 함.

구분	내용
제출기간	2020. 7. 27.(월) ~ 2020. 7. 31.(금) (10:00~16:00)
제출대상자	당첨자
제출장소	홍보관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로131)
유의사항	- 당첨자 서류 제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장시간 소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접수 건수의 과다로 인한 검증일정 및 운영시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합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시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계약 진행 이후 서류접수, 계약 일정 등을 별도 통보 예정 입니다.

■ 계약 시 구비 서류(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한함)

- 당첨자(일반공급)는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추후 지정하는 장소로 제출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 서류	○		주택 상태 확인서	본인	당첨 세대 방문(상태 확인) 후, 현재 상태로 계약체결 한다는 확인 서류(홍보관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분양대금 계좌에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 홍보관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아파트 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해 접수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접수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해당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7.1.)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Y”로 설정하여 발급)
	○		자금조달계획서	본인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약서	-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경우(홍보관에 비치)
일반공급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을 경우(1순위로 당첨시)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전체 포함” 발급 바람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서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이내 계속하여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7.1.)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Y”로 설정하여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피부양 직계비속)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해외 체류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계속하여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7.1.)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산검색결과 주택 소유로 판명 시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계약시 ※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		○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에“아파트 계약 위임용”으로 기재하여 발급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서만 계약이 가능함.
		○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7. 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 계약 체결 기간 및 장소

구분	기간	장소
정당 당첨자	2020.8.3.(월)~2020.8.5.(수)	홍보관

(일반공급1, 2순위)	(10:00~16:00), 3일간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로131)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당 당첨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동·호수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 유·무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유·무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6-101-536758	아시아신탁㈜	(필수사항) 입금시, 보내는 사람의 당첨자 이름과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아래 참조)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함(계약 현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은 분양대금 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은 계약 시 반드시 제출(입금예시: 1101동202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은 “11010202홍길동”으로 기재하여 입금)
- 공급금액 중 계약금과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송도국제도시개발(유)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입금예시: 1101동202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은 “11010202홍길동”으로 기재하여 입금)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해당 금액의 반환이 가능하고, 반환에 따른 이자는 없음. (반환 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분양대금의 납부기한은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2020.11.10.(월)까지 입니다.
- 잔금을 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 하더라도 선납 할인을 실시 하지 않음.
- 잔금은2020.11.10.(월)까지 미납할 경우, 연체한 것으로 보며 연체료는 연체된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율(연 6.5%)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잔금 납부기한(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 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 시(키불출 전),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함.
- 이 주택은 잔금 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함.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된 호수에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관련기관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외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8.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문고, 경로당,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놀이터가있으며, 주민운동시설은 헬스장, 골프연습장, 남녀사우나가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인정 항목별 등급표

■ 인정 공동주택명: 송도국제업무지구D17-1BL 공동주택.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9의2에「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 적용된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음.
■ 인정기관: 한국감정원, 인정일자: 2012년7월20일, 인정번호: 2012-056

■ 인정등급

성능구분	성능범주	세부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
	화장실소음		★★★☆
	경계소음		★★★★
	외부소음	실외소음도(5층이하)와 실내소음도(6층이상) 기준적용	★★☆☆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환경관련 등급	조경(외부환경)	외부 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일조(빛 환경)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에너지성능(열 환경)		★★☆☆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주택성능등급인정서

한 국 감 정 원

10. 기타 유의사항

■ 이 주택은 2015년 10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및 단지 여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및 단지 여건을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분양권 전매(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주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주택은2020.02.20.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아파트 입니다. 청약 및 계약 진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시2020.08.10. 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기간은 2020.11.10.까지 입니다. 1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의 경우 잔금납부시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또는“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고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가능일(2020.08.10.)부터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를 증명 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에 의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기존주택의 처분(소유권이전등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입주절차(키불출, 소유권이전서류교부)는 진행할 수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존주택 처분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미종결된 하자(5년차 이상)는 수분양자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이전됩니다.
■ 공급대금 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할 경우 입주일부터, 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입주할 경우에는 잔금납부약정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이 주택은 외국인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매매계약일 기준 현재 상태로 공급하므로, 입주 후 발견되는 모든 시설물[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마루, 단열, 도장,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배관 및 소화설비, 기타마감재 등]의 노후화 및 작동불량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2015년 10월에 준공된 주택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이행증권은 이 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2년, 3년차 하자담보책임 종료)
■ 5년차,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이 주택의 최초 사업시행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 등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과 하자보수청구권은 잔금납부일 이후 매수인에게 이관됩니다.
■ 잔금납부일 이후 세대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입주 후 시설물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는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계약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고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자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계약 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가 외국인임대주택으로 보유했던 주택이며, 분양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수탁자	시공사
상호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아시아신탁㈜	㈜포스코건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4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180
법인등록번호	101-81-84656	120-87-07104	506-81-02280

■ 이 주택은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신탁부동산을 위탁해 진행하는 부동산담보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이고, 아시아신탁㈜는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개발계획 및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경관상세계획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당 단지 및 주변 블록의 현황,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는 주변 공동시설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은 공동주택과 같은 단지로 별도의 대지 구획이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에 관련하여 계약자는 권리를 요청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됨.
■ 단지 배치 특성 상 단지 내.외부 도로(단지주변 및 도시계획도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당 단지의1층은 일부 필로티(옥외 공간) 및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어2층이 최하층 세대임.
■1층 주동 하부 필로티(옥외 공간)에는 쓰레기 이송설비 및 재활용 수거 공간, 자전거 보관소, 옥외 휴게 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계획안 및 자전거 주차대수는 주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공장소인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문주의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층의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상지붕에는 경관용 옥상녹화가 설치되어 관리상 접근은 통제됨.
■1701동203, 205호, 1702동202, 203호, 1703동202, 204, 205호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주동하부 공간이 타 동에 비하여 협소할 수 있으며 위 시설로 인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1703동204, 205호 하부에는 경로당, 보육시설이 있어 세대 내에서 부대시설 옥상이 보일 수 있고, 옥상조경 및 배수 등을 위한 점검 시 세대 내 프라이버시,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
■ 세대 냉방은 안방 및 거실에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1703동 저층 일부 세대는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시설(주차장, 실외기, 출입구 등) 이용에 따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702동19, 20층은 옥외 공용공간이 설치되어 이용 시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1701동, 1702동, 1703동 일부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문주, 경비실 등에 의한 소음, 일조,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의 경사로, 경사로 지붕 및 기계설비시설의 환기시설물(D.A) 위치로 인해 저층 일부 세대에서 조망 및 소음에 불리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의해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는 전면공지(보도, 자전거도로, 식수대 등)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천정고는 출입구, 지하 1층, 지하2층 차로 부분 모두 2.3M 입니다.
■ 공급안내 홈페이지: www.더샵그린워크분양전환.com
■ 홍보관 주소: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로131)
■ 분양 문의: ☎ 1811-9920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